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원 증원, 후보자추천위 설치 및 군인권보호관 변경 등〉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16호)

2025. 11.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인권위원 증원 및 대법원장 지명권 폐지	3
2. 위원장 국회 동의 및 상임위원 국회 인사청문	8
3. 인권위원 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	12
4. 임기 종료 인권위원 후임 임명기한 설정	19
5.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및 안건 전원위원회 회부	22
6. 의사 공개 및 회의록 작성 · 보존	29
7. 국회 선출 상임위원의 군인권보호관 담당	36
※ 참고자료	4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종오 · 전종덕 · 손 술 · 최혁진 · 신장식 · 정춘생
서영석 · 김재원 · 임미애 · 김준형 · 이재강 · 정혜경
김준혁 · 황운하 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5. 9. 16.

3. 회 부 일 : 2025. 9. 17.

※ 의안번호 : 130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해야 함.

그러나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12. 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다수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등의 행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추락하고 있음.

나아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하는 일부 상임위원이 독단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와

차별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 상황은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 할 것임.

이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를 통한 다수 인권위원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안 제5조 제2항),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여 추천 및 임명 절차에 시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조의2). 또한 제정 이래 인권위의 소관 업무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위원 수는 그대로여서 다양성과 책임성의 구현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인권위원 수를 13명으로, 이 중 상임위원의 수는 4인으로 증가시킴(제5조 제1항).

또한 대통령의 인권위원 임명에 있어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제5조 제5항), 상임위원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제5조 제2항).

아울러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들 중 위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들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들의 자의적인 회의진행을 막고(안 제13조), 위원회 각 회의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Ⅲ. 검토의견

1. 인권위원 증원 및 대법원장 지명권 폐지

개정안은 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함)의 정원을 11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에서 13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8명)으로 증원하고, ②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비상임위원 3명)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4명----- 13명-----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	② ----- ----- . 이 경우 상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u>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u>	1. <u>국회가 선출하는 9명(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u>	<삭 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1)에 따르면, 국가인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권위원회는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장관급) 1명 및 상임위원(차관급) 3명과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4명(상임위원 2명 포함)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은(상임위원 1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함.

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② 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 ·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③ 비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²⁾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인 정책권고, 조사 · 구제, 교육 · 홍보, 국내외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³⁾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2)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전원위원회 구성)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

제1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상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소위원회의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을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정하며, 각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결정한다.

참고로, 인권위원은 6개 소위원회 중 2개 또는 3개 소위원회의 위원임(2025. 9. 30. 기준).

소위원회 명칭	위원 구성(4명)	분 야
침해구제제1위원회	김용원 · 한석훈 · 소라미 · 공석	검 · 경 · 국정원, 입법부, 사법부
침해구제제2위원회	김용원 · 이한별 · 김용직 · 공석	구금 · 보호시설(장애인시설 제외), 기타 인권침해
아동권리위원회	이숙진 · 한석훈 · 소라미 · 공석	만19세미만아동(장애 제외)
차별시정위원회	이숙진 · 김용직 · 강정혜 · 공석	성희롱 · 차별행위 (아동 · 군 · 장애차별 제외)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이숙진 · 이한별 · 김용직 · 강정혜	장애차별,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군인권보호위원회	김용원 · 한석훈 · 이한별 · 강정혜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는 인권 관련 분야가 넓어지고 있고 인권 관련 분야의 전문화·세분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인권위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 지명·선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인권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되, 그 중 국회 선출 인권위원을 4명(상임위원 2명)에서 9명(상임위원 3명)으로 증원하고,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은 현행 4명(상임위원 1명)을 유지하며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 3명은 삭제함으로써,⁵⁾ 인권위원 임명의 민주성

구 분	내 용
정책권고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의견표명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의견표명
조사·구제	- 국가기관(지자체, 학교 포함),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조사·구제 -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 및 성희롱 조사·구제
교육·홍보	- 국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 인권문화 확산 및 홍보
국내외협력	-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 인권단체 등과의 협력 -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4)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1: 독립성 보장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 p.80

5) 상임·비상임으로 구분 시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1명 증원됨.

을 강화하고 인권위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라 선출·지명 기관별 인권위원 몫이 변경되어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선출·지명 기관별로 차지하는 인권위원 비율이 바뀌게 되는데, 현행과 비교하였을 때 개정안의 선출·지명 기관별 비율이 적절한 수준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2] 현행법 및 개정안 인권위원 구성 비교

구 분	현행법	개정안
전원위원회	11명 (국회 4명, 대통령 4명, 대법원장 3명)	13명 (국회 9명, 대통령 4명)
상임위원회 ⁶⁾	4명 (국회 2명, 대통령 2명)	5명 (국회 3명, 대통령 2명)

둘째, 대법원장 지명권 폐지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직무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시 (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부터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서 각각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상임위원의 경우 현재 차관급 보수가 지급되고 상임위원 1명당 4명의 인력이 지원되며 차량·사무공간 등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

6) 위원장은 대통령 몫에 추가함.

으므로,⁷⁾ 상임위원 1명 증원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조직 및 예산 규모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개정안과 유사하게 인권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⁸⁾

7)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상임위원 1명당 보수(연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154,222,920 원이고, 상임위원실에 4명(일반직공무원 3명, 임기제공무원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용차량으로 제네시스 G80이 제공되고 있음.

8) 인권위원 증원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433	신장식의원	인권위원의 정원을 15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9명)으로 증원

2. 위원장 국회 동의 및 상임위원 국회 인사청문

개정안은 ①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② 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5항).

[표-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u><후단 신설></u> 1. <u>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u> 2. (생략) 3. <u>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u> <u>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u>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 -----. <u>이 경우 상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u> 1. <u>국회가 선출하는 9명(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u>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u>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u>

현재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총 68명으로, 국회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위(23명)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직위(45명)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음.

[표-4]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명)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명)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
소관 상임위원회 (45명)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명, 중앙 선거관리위원 3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방송통신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

현재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없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함.⁹⁾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의 조사 및 개선 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 관련 단체·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님.¹⁰⁾

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표-5] 국가인권위원회 직무 및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설치 목적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향상
직무	◦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의견 표명 ◦ 인권침해행위,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인권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 유형,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권고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 이행에 관한 연구·권고·의견표명 ◦ 인권 관련 단체·개인·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협력 등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및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 ◦ 인권위원은 아래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 국회 선출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 대통령 지명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 대법원장 지명 3명
위원장 선출	◦ 인권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장관급)은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무직공무원인 상임위원(차관급)은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권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권고 및 의견 표명,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수행 업무에서 차지하는 권한 및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개정안은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는 위원장을 국회의

- 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동의를 받아 임명되도록 변경함으로써 임명절차에 있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상임위원 후보자의 인권의식, 중립성 및 자질을 검증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위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지 여부 및 상임위원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할지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지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역할 및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만 개정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은 개정안과 연계하여 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¹¹⁾

또한,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¹²⁾

11)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개정안과 동일하게 위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2호,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4호,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3호,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이 의결 전제로 함께 발의됨.

또한,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 전제로 함께 발의됨.

12)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인사청문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3. 인권위원 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

개정안은 인권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고, 국회 또는 대통령은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인권위원으로 선출·지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 신설).

[표-6]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구 분	주요내용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
기능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
위원 수	7명(위원장 1명 포함, 호선)
위원	○국회 선출 - 국회 추천 4명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 3명 ○대통령 지명 - 대통령 추천 4명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 3명
자격요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후보자 공개	후보 명단, 추천 이유 등 공개
자료 제공 요청	후보자 대상 소속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 요청
준속기한	후보자 추천 시 해산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249	박성준의원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

[표-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u>위원을</u>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④ 국회, 대통령은 인권----- -----제5조의 2의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u>위원을</u> ----- -----. 제5조의2(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u>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u>추천위원회의</u>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u>후보추천위원회</u> 위원은 국회선출의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4인과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4인과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④ <u>추천위원회</u>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현 행	개 정 안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를 추천한 이후 지체없이 후보 명단, 추천 이유 등을 공개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렴한 시민 의견 역시 공개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 대상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선출·지명¹³⁾한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식인데, 이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임명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¹⁴⁾

참고로,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아일랜드 등의 국가 인권기

13)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14)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1: 독립성 보장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 p.80

구에서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2018년부터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7명 또는 9명의 위원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왔으며, 2025년 9월 현재까지 후보추천위원회를 총 9회 운영하였음. 후보추천위원회는 인권위원(위원장 포함)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3~5명의 인권위원(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지명해왔음.¹⁵⁾

[표-8]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명	구성일	후보추천위 구성 내역		추천인원
		인원수	구 성	
최영애 (위원장)	2018. 6. 15.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송두환 (위원장)	2021. 6. 13.	9	대통령 추천 4,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 4	4명
안창호 (위원장)	2024. 7. 4.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5명
박찬운 (상임위원)	2019. 10. 18.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김용원 (상임위원)	2022. 12. 21.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문순희 (비상임위원)	2019. 6. 13.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15)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을 받아 회의지원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법규나 지침 등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위원명	구성일	후보추천위 구성 내역		추천인원
		인원수	구 성	
서미화 (비상임위원)	2020. 2. 1.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김종민 (비상임위원)	2022. 9. 21.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4명
이한별 (비상임위원)	2023. 5. 26.	7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4명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에 따른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는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여 인권위원의 전문성과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202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 시 A등급 재승인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다른 행정지침에 단일 독립선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권고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 기관과 위임법령 형식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는 단일 독립선출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개정안은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에 선출·지명 기관이 일부 관여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¹⁶⁾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4명)은 별개로 하더라도 국회 선출 인권위원(9명)까지¹⁷⁾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된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이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국회가 인권위원을 선출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단순히 추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인권위원 선출·지명 기관을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으로 구분하여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현행법 규정¹⁸⁾과 상충될 수도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인권위원 선출·지명 기관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위임법령의 종류를 인권위원 선출·지명 기관의 법령체계에 맞추어 국회규칙·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에 설치되어 있고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며, ②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고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③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및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 설치되어 있고 관련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되어 있음.

16)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을 선출·지명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7)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선출 9명, 대통령 지명 4명임.

18)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와 대통령이 선출·지명 기관임.

[표-9]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기관 및 위임법령 현황

후보추천위	설치기관	위임법령 형식	비 고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	대법원규칙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검찰총장후보추천위	법무부	대통령령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제청
특별검사후보추천위	국회	국회규칙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후보추천위	국회	국회규칙	-

둘째, 개정안과 유사하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¹⁹⁾

19)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31	진성준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73	서미화의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77	고민정의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433	신장식의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4. 임기 종료 인권위원 후임 임명기한 설정

개정안은 인권위원이 임기를 종료하면 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표-10]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략)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u>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u> 대통령은 <u>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u>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u>위원이 임기를 종료하거나 위원 중 결원이</u> ----- <u>임기 종료 또는 결원된 날</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제2항²⁰⁾은 결원²¹⁾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후임자를 신속하게 임명하여 결원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8항²²⁾은 임기가 끝난 인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21) ‘결원’은 ‘임기만료’와 구분되는 개념임. 위원이 임기 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면직되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인정되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지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이유로 당연퇴직되거나,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등이 결원에 해당함(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80).

2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권위원회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인권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 대한 후임자의 임명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인권위원의 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임기 종료 후 후임자 미임명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임기가 종료된 인권위원의 임기 종료 후 장기간에 걸친 업무 수행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실효성 측면에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제2항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결원 후 30일 이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사례가 있고 대통령 지명 몫인 4명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위원(국회 선출 몫 4명, 대법원장 지명 몫 3명)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도 없어, 해당 규정은 혼시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²³⁾

즉, 개정안과 같이 임기 종료된 인권위원의 후임자에 대한 임명기한을 명시하더라도 혼시규정으로서 후임자의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선언적 효과는 있을 것이나 실질적 효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p.74・80~81

둘째, 개정안과 유사하게 인권위원의 임기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²⁴⁾

24) 인권위원 임명기한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547	서미화의원	인권위원의 임기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 후임자 임명

5.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및 안전 전원위원회 회부

개정안은 ①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②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 · 의결안건 중 i) 사안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i) 지속적으로 위원 간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13조제2항 및 제3항).

[표-1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③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상정된 심의 · 의결된 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위원간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제2항²⁵⁾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인권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²⁶⁾

한편,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²⁷⁾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와 소위원회(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① 전원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²⁸⁾ ②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²⁹⁾ ③ 소위원회의 종류

2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9조(상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상임위원회는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소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28)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전원위원회 구성)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

제16조(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 관장사항 및 심의·의결사항³⁰⁾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
2.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에 제출을 건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법·시행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상임위원회·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제1호에 관한 사항 중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사항
 7. 법 제19조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8. 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9. 법·시행령·규칙에서 전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10. 상임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11. 그 밖에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사항
- 29)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9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구금·보호시설과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직권조사 개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소관 부서는 해당 소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5.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6.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② 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상임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7호 및 제28조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 30)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2조(소위원회의 종류와 관장) ①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다음 각 호를 두어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침해구제제1위원회: 조사총괄과 관장 사항
 2. 침해구제제2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관장 사항
 3.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관장 사항
 4.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및 성차별시정팀 관장사항
 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및 장애차별조사2과 관장사항
 6.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보호국 관장 사항
- 제25조(소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의 직권조사의 개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건 관련하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필요한 사항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조정위원회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

소위원회의 경우 현재 6개(침해구제제1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위원회별 위원은 4명임.

[표-12] 소위원회 구성 현황(2025. 9. 30. 기준)

소위원회 명칭	위원 구성(4명)	분 야
침해구제제1위원회	김용원 · 한석훈 · 소라미 · 공석	검 · 경 · 국정원, 입법부, 사법부
침해구제제2위원회	김용원 · 이한별 · 김용직 · 공석	구금 · 보호시설(장애인시설 제외), 기타 인권침해
아동권리위원회	이숙진 · 한석훈 · 소라미 · 공석	만19세미만아동 (장애 제외)
차별시정위원회	이숙진 · 김용직 · 강정혜 · 공석	성희롱 · 차별행위 (아동 · 군 · 장애차별 제외)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이숙진 · 이한별 · 김용직 · 강정혜	장애차별,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군인권보호위원회	김용원 · 한석훈 · 이한별 · 강정혜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합의제 정신에 기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

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구금 · 보호시설과 법 제50조의4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6. 전원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6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③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 · 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 회부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는 한편,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회의에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이 내용상 중대하고 사회적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심의·의결안건에 대한 지속적인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사 형성·결정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어려운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로 하여금 책임 있고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 당시에는 소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2005. 7. 29. 일부개정·시행)을 통하여 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구성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였으므로,³¹⁾ 이러한 의결정족수 변경 연혁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3

31)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2005. 7. 29. 일부개정·시행)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②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³²⁾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전원위원회 회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지속적으로 위원 간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를 전원위원회 회부 사유에 추가하는 한편, ‘회부할 수 있다’를 ‘회부한다’로 수정하여 재량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원위원회 회부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의무적 전원위원회 회부의 사유인 ‘지속적(기간)으로 위원 간 합의(양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셋째,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①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제13조에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회부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연관성이 적어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32)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② 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소위원회의 심의·의결) ③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 회부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문에 한꺼번에 나열된 전원위원회 회부 사유가 길고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며, ③ 전원위원회란 용어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아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법에서 전원위원회를 적절한 용어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근거 규정인 제12조에 개정안의 내용을 신설하되, 전원위원회 회부 사유를 각 호로 구분하고 전원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상임위원회·소위원회 심의·의결안건의 전원위원회 회부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³³⁾

33) 의결정족수 또는 전원위원회 회부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	강유정의원	상임위원회·소위원회 심의·의결안건의 전원위원회 회부
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077	고민정의원	소위원회는 구성인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592	신장식의원	상임위원회·소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6. 의사 공개 및 회의록 작성·보존

개정안은 ① 국가인권위원회(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의사의 비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명시하고, ② 국가인권위원회(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표-1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②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의사 공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³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는

3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공개하되 위원회·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제1항³⁵⁾에서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②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③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④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의결로써 비공개할 수 있음.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5)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3.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4.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의결로 공개할 수 있음.³⁶⁾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상정 안전에 대한 비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전원위원회는 총 197건의 안전 중 80건(40.6%)을 비공개하였고, 상임위원회는 총 255건의 안전 중 71건(27.8%)을 비공개하였음.³⁷⁾

[표-14] 최근 3년간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상정 안전 비공개 현황

(단위: 건, %)

구 분	공개 안전수(비율)	비공개 안전수(비율)	계
전원위원회	117(59.4)	80(40.6)	197(100.0)
상임위원회	184(72.2)	71(27.8)	255(100.0)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의사의 비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보

3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② 전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37)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의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전 비공개를 엄격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하고 회의가 공개될 경우 단순히 우려된다는 수준을 넘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예외적으로 비공개 논의를 한다는 취지라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포괄적인 비공개 회의의 관행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2: 투명성 제고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 pp.86~89).

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비공개 사유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비공개 사유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를 비교하여 그 적정한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³⁸⁾

[표-15] 개정안 및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상 비공개 사유 비교

개정안상 비공개 사유	현행 운영규칙상 비공개 사유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38) 개정안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 및 업무 내용과 관련이 적은 사유는 비공개 사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상 비공개 사유	현행 운영규칙상 비공개 사유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 의사의 비공개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³⁹⁾

39)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574	서미화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전으로 제한

나. 회의록 작성·보존

회의록의 작성·보존 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나, 하위 규범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서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⁴⁰⁾

[표-16] 현행 운영규칙 및 개정안상 회의록 기재사항 비교

구 분	현행 운영규칙	개정안
기재사항	○ 회의명 ○ 회의 소집자 ○ <u>일시 및 장소</u> ○ <u>출석 인권위원 및 회의 참석·배석한 사람의 성명·직책</u> ○ 회의 진행 순서 ○ <u>상정 안건</u> ○ <u>토론 내용</u> ○ <u>의결 사항</u> 및 표결 방법과 표결 내용 ○ 의견서 또는 질의·답변 ○ 그 밖의 필요 사항	○ <u>회의 일시</u> ○ <u>장소</u> ○ <u>참석자</u> ○ <u>안건</u> ○ <u>토의 내용</u> ○ <u>의결 사항</u>

40)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회의록의 작성) ① 각 위원회는 회의의 운영 및 진행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회의 소집자
3. 일시 및 장소
4. 출석한 인권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
5. 회의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토론 내용
8. 의결 사항 및 표결 방법과 표결 내용
9. 의견서 또는 질의·답변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과 별도로 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속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각 위원회 차기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차 회의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각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⑥ 회의의 내용은 녹음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⑦ 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안과 같이 회의록 기재사항 및 작성·보존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인권위원의 발언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기재사항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상 기재사항에 비하여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기재사항의 적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의록을 기록·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⁴¹⁾

41) 국가인권위원회 회의록 기록·보관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73	서미화의원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의의 명칭, 일시 및 장소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기록·보관

7. 국회 선출 상임위원의 군인권보호관 담당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표-1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u>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u>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u>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담당한다.</u>

군인권보호관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⁴²⁾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있음.⁴³⁾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면서, 군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군부대 방문조사, 사망사건 조사·수사 입

4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군인권보호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말한다.

43) 2016. 6. 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2015. 12. 29. 제정)되어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2. 7. 1.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2022. 1. 4. 일부개정)되어 군인권보호관의 조직·업무 및 운영 관련 사항이 법제화되었음.

회, 긴급구제 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18] 군인권보호관의 조직 및 권한

구 분		주요내용
조 직	군인권보호관	○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겸직 ○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군인권보호위원회	○ 군인권 침해예방 등 수행하는 소위원회
	지원조직	○ 군인권보호관 업무 지원을 위하여 사무처에 설치 ⁴⁴⁾
권 한	진정사건 조사	○ 군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군부대 방문조사	○ 군인권보호관 등의 군부대 방문조사
	사망사건 수사 입회	○ 사망사건 조사·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등 입회 요구
	피해자 보호조치 (긴급구제 조치)	○ 위원회등은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

참고로,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 2022. 7. 1. 이후 2025. 9. 30.까지 군부대 방문조사 현황, 사망사건 수사 입회 현황, 긴급구제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2회 군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430건의 사망사건 통보에 대하여 182건 입회하였으며 10건의 긴급구제를 처리하였음.

[표-19] 군부대 방문조사 현황(2022. 7. 1. ~ 2025. 9. 30.)⁴⁵⁾

연 번	사건번호	조사개시 결정일	사건명	경 과
1	22-방문-0000400	'22. 8. 23.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상황 개선 권고	종결
2	23-방문-0000100	'23. 2. 28.	동부전선 격오지 부대 방문조사	종결
3	23-방문-0000600	'23. 5. 30.	해군 격오지(함정) 방문조사	종결
4	23-방문-0000900	'23. 8. 29.	2023년 군 구급시설 방문조사	종결

44) 군인권보호국(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의 3개 과단위 조직으로 구성)에서 지원하고 있음.

연번	사건번호	조사개시 결정일	사건명	경과
5	23-방문-0001000	'23. 9. 26.	군기교육대 방문조사	종결
6	23-방문-0001100	'23. 11. 28.	여군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군부대 방문조사(공군, 육군)	종결
7	24-방문-0000400	'24. 2. 29.	육군사관학교 병영부조리 예방을 위한 방문조사	종결
8	24-방문-0000500	'24. 3. 29.	해병대 장병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방문조사	종결
9	24-방문-0000700	'24. 4. 30.	여군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군부대 방문조사(GOP)	종결
10	24-방문-0000800	'24. 6. 25.	육군 12사단 신교대대 운영 관련 방문조사	종결
11	24-방문-0001000	'24. 7. 23.	공군 격오지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방문조사	종결
12	24-방문-0001100	'24. 7. 23.	2024년 군 구급시설 방문조사	종결
13	24-방문-0001300	'24. 11. 27.	공군 전투비행단 전대장 성폭력 등 방문조사	종결
14	25-방문-0000100	'25. 1. 23.	다문화 및 해외 장기 거주 장병 등의 인권 증진을 위한 방문조사	종결
15	25-방문-0000500	'25. 4. 2.	해군 함정 근무 여군의 처우·환경 관련 방문조사	조사중
16	25-방문-0000600	'25. 4. 2.	군 안전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방문조사	조사중
17	25-방문-0000700	'25. 4. 2.	사관학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방문조사	조사중
18	25-방문-0000800	'25. 4. 2.	군 사망사건 발생부대 장병 관리체계 방문조사	조사중
19	25-방문-0000900	'25. 5. 7.	12. 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	종결
20	25-방문-0001500	'25. 7. 25.	2025년 여성 간호장교 인권 및 처우 관련 방문조사	조사중
21	25-방문-0001700	'25. 9. 19.	후반기 교육기관 도움·배려병사 관리체계 관련 방문조사	조사중
22	25-방문-0001800	'25. 9. 19.	군무원 처우·환경 점검을 위한 방문조사	조사중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45) 군부대 방문조사는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전에도 실시되었는데, 2020년에 1회(사건명: 2020 군 구급
시설 방문조사), 2021년에 1회(사건명: 2021 군 교정시설 방문조사) 실시되었음.

[표-20] 사망사건 통보 및 입회 현황(2022. 7. 1. ~ 2025. 9. 30.)

(단위: 건)

구 분	사망사건 통보					위원회 대응			
	자해 사망	병사	사고사	기타	소계	입회	기초 조사	소계	진정 접수
'22.7.1.~12.31.	35	26	19	-	80	28	52	80	10 (직권 1)
'23.1.1.~12.31.	68	41	16	1	126	53	73	126	9 (직권 1)
'24.1.1.~12.31.	77	46	21	1	145	62	83	145	7
'25.1.1.~9.30.	38	29	12	-	79	39	40	79	2
계	218	142	68	2	430	182	248	430	28 (직권 2)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표-21] 긴급구제 처리 현황(2022. 7. 1. ~ 2025. 9. 30.)⁴⁶⁾

연 도	사건번호	제 목	종결일	결 과
2022	22-긴급-0001100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긴급구제	'22. 8. 16.	긴급구제조치 권고
2023	23-긴급-0002000	군인 사망사건 군수사 관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긴급구제	'23. 8. 18.	긴급구제조치 하지 않음
2024	24-긴급-0000900	군 지휘관의 부당 처우 및 인권침해 등	'25. 1. 9.	긴급구제조치 하지 않음
2024	24-긴급-0001700	예비군 동원 보류자의 예비역 긴급대상 제외 부당	'24. 8. 5.	긴급구제조치 하지 않음
2025	25-긴급-0000500 25-긴급-0000600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및 서신 수발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25. 2. 18.	긴급구제조치 하지 않음 (정책권고)
2025	25-긴급-0001800	군의 부당한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25. 5. 29.	긴급구제조치 미상정 종결
2025	25-긴급-0001900	국군병원 환자에 대한 긴급 조치 요청	'25. 6. 20.	긴급구제조치 미상정 종결

46) 긴급구제는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전에도 처리되었는데, 2020년에 1건(군 복무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 긴급구제조치 권고), 2021년에 1건(군인, 부당 전출명령 및 강제이주 상황 긴급구제: 긴급구제조치하지 않음) 처리되었음.

연 도	사건번호	제 목	종결일	결 과
2025	25-긴급-0002100	육군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 조사 등	'25.7.4.	긴급구제조치 미상정 종결
2025	25-긴급-0002200	군 성고충 사안 조사 시 적법 절차 위반 등	'25.7.7.	긴급구제조치 미상정 종결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그런데,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있어,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 문제를 정부측 입장에서 바라볼 개연성이 높아 군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⁴⁷⁾

이에 개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군인권보호관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업무를 보다 독립적·능동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군인권보호관의 지위 및 임명 문제는 제21대국회에서 군인권 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심사할 당시 쟁점사항 중 하나였음.

당시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안’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 1명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선출하는 안’을 병합 심사하였는

47) 이승택, 「군인의 인권과 군인권보호관제도」, 법학연구 제24권제1호(2024. 3.), p.114

데,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을 선출하게 되면 결국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치적·이념적 논쟁이나 대립이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이 군인권보호관을 지명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이 제기⁴⁸⁾ 되었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현행과 같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게 되었음.⁴⁹⁾

[표-22] 제21대국회 군인권보호관 지위·임명 관련 개정안 내용

조승래의원안	배진교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 겸직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 겸직 (위원 2명 증원)	국회 선출 상임위원 중 1명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선출 (위원 2명 증원)

따라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담당하도록 할지 여부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당시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국회 선출 상임위원 임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상임위원 3명 중 국회는 2명의 상임위원을 선출⁵⁰⁾하고 있어 국회 선출 상임위원 2

48)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록(2021. 11. 29.), p.4
발언 취지 및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문장을 정리하였음.

49) 참고로, 제19대국회에서는 군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고,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등 정책개선과제를 결정하였음(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5, p.42).

50)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 4명 중 국회는 3명의 상임위원을 선출함.

명 중 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군인권보호관을 담당하게 되는 것인지 법문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발의된 이수진의원안의 경우 국회 선출 몫 상임위원 중 1명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음.⁵¹⁾

셋째, 개정안과 유사하게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말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⁵²⁾

문 의 처
02)6788-5017

51) 이수진의원안 제51조(군인권보호관) ② 국회는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 1명을 제1항의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선출한다.

52) 국회 선출 상임위원의 군인권보호관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691	박지원의원	국회 선출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 겸직
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433	신장식의원	국회 선출 상임위원 중 군인권보호관 임명

참고 1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관련 국내외 참고사례

□ 해외 인권기구의 후보추천위원회 현황

국가명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후보추천위원회 기능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이 ‘위원선정패널’ 구성	위원선정패널에서 위원장급 3명, 위원급 8명 선정 후 명단 제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의회에서 정당 의석 비율에 맞추어 ‘추천위원회(Committee of the Assembly)’구성	추천위원회에서 다수 득표를 얻은 자가 인권 위원으로 추천됨.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사법기관과 의회의 구성원이 구성하는 후보자선정위원회 구성	후보자선정위원회가 2배수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선출하여 국왕이 임명함.
아일랜드 (아일랜드 인권 및 평등 위원회)	위원 공석 발생시 정부가 자문단 (the Service) 구성	자문단이 예비 후보자를 선정, 정부 허가를 얻어 대통령이 지명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연구」, 2016

□ 국내기관의 후보추천위원회 현황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기관 (법적근거)	위원 구성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10명)	대법원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제1항)	○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각 1명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명 이상은 여성)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9명)	법무부 (검찰청법 제34조의2제1항)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각 1명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명 이상은 여성)

후보추천 위원회	설치기관 (법적근거)	위원 구성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7명)	국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각 1명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	국회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밖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다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을 경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위원으로 위촉

권고: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A등급 재승인을 권고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승인소위는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는 파리원칙 및 이번 등급심사 기간 중 승인소위가 제시한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틀과 일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국제·지역·국가 차원의 관련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인권기구와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지속할 것을 독려한다.

승인소위 참고 사항:

1.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그 중 2명은 상임),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그 중 1명은 상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인권위원을 임명한다.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식(인권위원 임기만료)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그러나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은 3개의 선출·지명기관에 의해 적용되는 일관되고 공식화된 단일 선출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며, 국회는 정당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대법원은 시민사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는다고 보고했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음을 인정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다른 행정지침에 단일 독립선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독려한다.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 절차를 관련 법률, 규칙 또는 구속력 있는 행정지침에 적절히 규정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고위직에 대한 독립성과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과 기반의 선출을 촉진하고 다원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 의사결정체의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승인소위의 일반견해 1.8을 참고한다.

2. 재정 자율성

승인소위는 「국가재정법」 제43조 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강조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고, 채용, 예산 및 회계를 포함한 특정 관행들을 규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국가가 국가기관들이 공적 자금(예산)의 사용에 대해 적절히 책임지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균일한 규칙이나 규정을 마련한 경우, 그러한 규칙이나 규정을 국가인권기구에 적용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독립적 및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인정하
며,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인 노
력을 할 것을 독려한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2와 국가인권기구의 행정규정에 관한 승인소위의 일반
견해 2.7을 참조한다.

참고 3 군인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2022. 7. ~ 2025. 9.]

□ 2022년 7월 ~ 12월

(단위: 건)

회 차	일 자	참석위원	심의결과		
			합 계	보고안건	의결안건
1차	2022. 7. 1.	박찬운 위원장 석원정 위원 한석훈 위원	1	1	-
2차	2022. 7. 26.		28	6	22
3차	2022. 8. 23.		14	4	10
4차	2022. 9. 23.		42	2	40
5차	2022. 10. 20.		20	6	14
6차	2022. 11. 15.		22	4	18
7차	2022. 12. 20.		29	9	20
합계			156	32	124

□ 2023년

(단위: 건)

회 차	일 자	참석위원	심의결과		
			합 계	보고안건	의결안건
1차	2023. 1. 3.	박찬운 위원장 석원정 위원 한석훈 위원	1	0	1
2차	2023. 1. 31.		25	6	19
3차	2023. 2. 28.		30	5	25
4차	2023. 4. 4.	김용원 위원장 석원정 위원 한석훈 위원	56	11	45
5차	2023. 4. 28.		31	7	24
6차	2023. 5. 30.		27	7	20
7차	2023. 6. 28.		39	9	30
8차	2023. 7. 25.	김용원 위원장 원민경 위원 한석훈 위원	34	7	27
9차	2023. 8. 9.		1	0	1
10차	2023. 8. 29.		26	10	16
11차	2023. 9. 26.		16	3	13
12차	2023. 10. 24.		22	5	17
13차	2023. 11. 28.		33	3	30
14차	2023. 12. 27.		19	5	14
합계			360	78	282

□ 2024년

(단위: 건)

회 차	일 자	참석위원	심의결과		
			합 계	보고안전	의결안전
1차	2024. 1. 30.	김용원 위원장 원민경 위원 한석훈 위원	46	6	40
2차	2024. 2. 28.		31	3	28
3차	2024. 3. 29.		24	2	22
4차	2024. 4. 30.		23	8	15
5차	2024. 6. 4.		31	6	25
6차	2024. 6. 25.		39	7	32
7차	2024. 7. 23.		12	4	8
8차	2024. 9. 11.		49	10	39
9차	2024. 9. 24.		5	0	5
10차	2024. 10. 23.		32	5	27
11차	2024. 11. 27.		33	4	29
합 계			325	55	270

□ 2025년 1월 ~ 9월

(단위: 건)

회 차	일 자	참석위원	심의결과		
			합 계	보고안전	의결안전
1차	2025. 1. 17.	김용원 위원장 한석훈 위원 이한별 위원 강정혜 위원	58	6	52
2차	2025. 2. 18.		1	0	1
3차	2025. 2. 26.		23	2	21
4차	2025. 3. 28.		1	0	1
5차	2025. 4. 2.		33	6	27
6차	2025. 5. 7.		39	7	32
7차	2025. 6. 24.		35	5	30
8차	2025. 7. 25.		47	4	43
9차	2025. 9. 19.		77	12	65
합 계			314	42	272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